

## 2019 년 러시아 노동·이민법 개정 동향

### 연금개혁

#### 1. 노동자 정년 상향

연금수령(정년) 연령이 남녀 각각 기존 60 세, 55 세에서 65 세, 60 세로 상향됨에 따라 2019 년 1 월 1 일부터 정년이 매년 1 년씩 단계적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남성을 기준으로 60 세에 근무경력이 42 년 이상이라면, 24 개월 조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여성의 경우, 55 세에 근무경력이 37 년을 넘겨야 합니다.

별도로 상기인과 함께 조기연금수령권을 누릴 수 있는 노동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경력이 15 년 이상인 여성으로, 본인이 출산하여 8 세까지 양육한 자녀가 4 명일 경우 56 세에 조기은퇴/연금수급권 행사 가능
- 근무경력이 15 년 이상인 여성으로, 본인이 출산하여 8 세까지 양육한 자녀가 3 명일 경우 57 세에 조기은퇴/연금수급권 행사 가능

#### 2. 고령노동자 부당 채용거절/해고 시 고용주 형사처벌

연금수령(정년) 연령에 근접한 노동자를 부당한 사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한 고용주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2018 년 10 월 14 일 시행되었습니다.

정년 연령에 근접한 노동자란, 정년을 5 년 앞둔 노동자를 의미하며 법률상 별도의 노동자 분류로서 2019 년 1 월 1 일부 법제권에 편입되었습니다.

위법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은 200,000 루블(약 340 만 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18 개월치 월급여에 해당하는 액수의 벌금을 내거나 최장 360 시간 강제노역을 해야 합니다.

### 노동법

#### 3. 2019 년도 정기감사 대상자 확정

노동고용청은 2019 년도 정기노동감사 대상업체목록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산하기관인 노동감사청이 정기노동감사를 통해 러시아 노동환경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 4. 사업체의 의무적 근로환경점검 기한 만료

2014 년부터 고용주로 하여금 새로운 기준으로 근로환경을 점검토록 강제하는 '노동조건특별평가' 실시의무의 유보기간이 2018 년 12 월 31 일 만료하였습니다. 이로써 2019 년 1 월 1 일 이후 모든 사업체는 노동조건특별평가 실시사실 증빙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각 사업체는 노동조건특별평가 실시결과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오는 2020 년부터 노동고용청은 통합정보망을 활용하여 노동조건특별평가를 불실시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벌을 가할 예정입니다.

## 5. 프리랜서 소득세 도입

고용주 및 종업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인 이른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소득세 과세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2019년 1월 1일 모스크바 시, 모스크바 주, 칼루가 주, 타타르스탄 공화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앞서 세무청은 납세 및 사회보장기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만약 세무청이 사업체의 프리랜서 제도 남용을 적발한다면, 해당 사업체는 추가 납세의무 및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6. 건강검진을 위한 특별유급휴가 제도 도입

건강검진을 위한 특별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의 개정법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노동자는 연 28일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3년에 1 근무일씩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분류의 노동자는 매년 2 근무일씩 떠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류의 노동자로는 i) 정년 연령에 근접한 노동자와 ii) 정년 후에도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한 특별유급휴가 신청은 반드시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이민법

### 7. 허위 거주지등록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

외국인/무국적자의 허위 체류지도착신고(거주지등록)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지난 2018년 11월 23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이 정한 허위 거주지등록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허위 정보/서류의 제공/제출.
- 외국인/무국적자가 실제 근로하지 않는 회사 주소로의 거주지등록.
- 외국인/무국적자가 체류할 의사가 없거나, 초청자가 제공할 의사가 없는 거소지 주소로의 거주지등록.

허위 거주지등록은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범법자는 500,000 루블(약 850만 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3년치 월급여에 해당하는 액수의 벌금을 납부하거나 최장 3년간 강제노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실형선고 시 최장 3년간 특정직책담당금지(직위해제) 또는 특정활동영위금지 등의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8. 초청자 외국인 출입국관리 부담 가중

러시아로 외국인을 초청한 기관의 책임부담을 가중하는 취지의 개정법이 2019년 1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및 출장자에게 중요한 내용으로, 이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한 기관은 본인이 초청한 외국인이 러시아 이민법 및 출입국관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청자가 외국인 관리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에 관하여 러시아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초청자에 대한 행정처벌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바입니다.

초청자의 미흡한 외국인 관리에 대한 행정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의 경우 2,000 루블(약 34,000 원) – 4,000 루블(약 68,000 원);
- 법인 임원(관리자급)의 경우 45,000 루블(약 76 만 원) – 50,000 루블 (약 85 만 원);
- 법인의 경우 400,000 루블(약 680 만 원) – 500,000 루블(약 850 만 원).

## 사법

### 9. 소송법제 정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상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올해 2019 년 시행될 예정으로, 노동분쟁 해결 실무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법은 법정변호사(advocate) 및 법학학위 소지자(jurist)만이 소송대리권을 갖는 법률가 강제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소송당사자의 법정대리인(ex. 대표이사)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1 심 및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서 상고(cassation) 절차도 정비되었는데, 통상 상고법원으로 직접 제출하였던 상고장은 앞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상고법원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더불어 상고기간은 전심판결일 기준 6 개월에서 3 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더불어 노동분쟁 재판관할이 없는 상사법원으로 제기된 소송은 재판관할권이 있는 일반법원으로 이송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법률은 소장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필수적 요건을 추가였습니다.

**주의사항:** 본 뉴스레터는 공개정보 상에서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자료에 수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폐사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Irina Anyukhina**

파트너, 노동법

E: [ianyukhina@alrud.com](mailto:ianyukhina@alrud.com)

올해의 러시아 로펌 – Who's Who Legal Awards 2016 - 2018;

올해의 베스트 러시아 토종 로펌 – The Lawyer European Awards 2015;

러시아 리딩 로펌 – Chambers Global & Europe, Chambers HNW, Legal 500, IFLR1000.

